

# 롯데푸드 주식회사 감사위원회 규정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롯데푸드주식회사 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3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 및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.
- ③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실태 평가
-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## 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2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5조 (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법령, 정관,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 시점까지로 한다.
- ②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.

## 제6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10조항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7조 (회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년 3월 1회로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8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3항에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9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10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또한,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에도 결의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 제11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- (1)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청구
  - (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-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 - (1)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
  - (2)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
  - (3)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  - (4)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
- ③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④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

- (1) 업무·재산 조사
  - (2) 이사의 보고 수령
  - (3)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
  - (4)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
  - (5) 외부감사인(이하 "감사인"이라 한다) 선정 및 해임
  - (6)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
  - (7)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
  - (8) 감사계획 및 결과
  - (9)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
  - (10) 내부통제제도(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)의 평가
  - (11) 선정된 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
  - (12)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  - (13) 감사인의 감사보수, 감사시간,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
  - (14)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
  - (15)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
  - (16)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
-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⑥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2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4조 (통지의무)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7일 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## 제15조 (선정 및 선임)

### ① 선정

- (1) 회사의 감사인은 위원회가 선정한다.
- (2)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,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 24.5의 서식을 따라 문서화 한다.
- (3) 위원회는 감사인 후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다.
- (4) 위원회는 감사인 후보 평가를 위해 대면회의를 개최한다.
- (5)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첨부24.6에 따른 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, 합산 점수의 최고 득점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한다.
- (6) 위원회는 감사인으로 선정된 자와 접수한 제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시간, 감사인력,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 등을 합의하여 확정한다.

### ② 선임

- (1) 회사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한다.

### ③ 선임 등의 보고

- (1)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 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소집 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, 감사인 선임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한다.
  - (가) 주주에게 문서로 통지
  - (나)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 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
- (2)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 선임하는 경우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.
  - (가)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
  - (나)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 선임하는 경우

## 제16조 (감사인의 변경)

회사는 선임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 다음 각 조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다.

- ①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(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.)
- ②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
- ③ 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④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
## 제17조 (감사인의 해임 및 해지)

### ① 감사인의 해임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요청으로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한다.

- (1)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(2)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
- (3)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
- (4)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
- (5)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, 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

### ② 감사계약의 해지

- (1)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직무제한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며,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- (2)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- (3) 회사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 1호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18조 (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)

-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(이하 '전기감사인'이라 한다)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② 회사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에게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한다.
- ③ 회사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동조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한다.

## 제19조 (독립성 확보)

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,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.

#### 제20조 (의견교환)

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

#### 제21조 (감사록의 작성)

-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#### 제22조 (전담부서의 설치 등)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전담담당자의 설치·운영,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#### 제23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